

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에 대한 R&D 지원과 신기술 시장성 검증 확대를 통해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 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(사무형)
 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1.1.~2022.12.31.)
 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 - 수탁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(마포구 월드컵북로 400)
 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48,607백만원('20년 예산안)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2(사무의 위탁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, 산·학·연의 수요에 맞춘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
 -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 증가,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가 가능함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
- 서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-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
- 중앙정부 R&D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
- 기타 '市'가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

-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('19. 6. 21.) : 적정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19. 9. 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('19. 10. 2.)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,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개발·보급·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4조 (산학연협력계약)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39조 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제20조(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의2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오권영 (☎ 2133-5226)